

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~ 1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4. 12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-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 2㎡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 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하고,
-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임대주택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화물적재면적 2㎡미만(무쏘 픽업, 코란도 밴 등)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나.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의1).
- 다. 임대주택 감면 및 추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(안 제11조).
- 라. 터미널용 토지 50%감면 조항을 삭제(안 제15조 및 제21조).
- 마.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히 함(안 제16조).
-토지 및 지상건축물→토지·지상건축물·주택
- 바.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중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추가(안 제23조).
- 사.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기한('05. 12. 31)을 삭제(안 제25조).

3. 참고자료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임대주택법」
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▶ 표준안 시달 : 도 세정과-11197(2005. 12.21), 도 세정과-1595(2006. 2. 14)
- 나. 예산조치 : 없음
- 다. 기 타
 - (1)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 - (2)입법예고(2006. 2. 28 ~ 3. 19)결과 : 의견제출없음

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

가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

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

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

제5조의1(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1(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)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,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.

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”를 각각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“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를 각각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중 “토지 및 지상 건축물”을 “토지·지상 건축물·주택”으로 한다.

제21조중 “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”를 “창고용에”로 한다.

제23조제1호 및 제2호중 “같은조제1항제2호의2·제2호의3·제2호의4”를 “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중 “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”을 “취득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시한) 제5조의1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- ③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) ①(생략) ②(생략) 1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2~4. (생략) ③(생략)</p> <p>제3조(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 1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</p>	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 2~4. 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(「자동차관리법」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p>2.~4. (생 략) ②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p>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① 공공단체·주택건설사업자(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) 「주택법」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</p>	<p>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</p> <p>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의1(지방의료원에 대한감면)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,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.</p> <p>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①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현 행	개 정 안

현행	개정안
<p>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</p>
<p>2. (생략) 제15조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) 〈삭제〉</p>
<p>제16조(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) ①(생략) 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(그 해당부분에 한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,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.</p>	<p>제16조(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)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토지·지상 건축물·주택----- ----- -----</p>
<p>제21조(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) 과세기준일 현재 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</p>	<p>제21조(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) ----- ----- -----창고용에----- ----- -----</p>

